

숙박 약관

2026년 2월 28일

본 숙박시설명: Villa El Cielo Myoko

제 1 조 (적용 범위)

본 숙박시설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의 규정에 따르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것을 말함. 이하 동일)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본 숙박시설이 법령 등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수락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2 조 (숙박 계약의 신청)

본 숙박시설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본 숙박시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숙박자 이름, 연락처
-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판매 사이트에 게시된 숙박 요금에 따릅니다.)
- (4) 기타 본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 전항 제 2 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본 숙박시설은 해당 신청이 접수된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 3 조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숙박 계약은 본 숙박시설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본 숙박시설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경우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한 경우, 숙박 기간의 숙박료를 한도로 본 숙박시설이 정하는 예약보증금을 본 숙박시설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약보증금은 먼저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되며, 제 6 조 및 제 18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 순서로 충당되며, 잔액이 있을 경우 제 12 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급 시 반환합니다.

4. 제 2 항의 예약보증금을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라 본 숙박시설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예약보증금의 납부 기한을 지정할 때 본 숙박시설이 그 사실을 숙박객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 4 조 (예약보증금 지급을 면제하는 특약)

전조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숙박시설은 계약 성립 후 해당 항의 예약보증금 지급을 면제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인할 때, 본 숙박시설이 전조 제 2 항의 예약보증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해당 예약보증금의 지급 기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의 2(시설 내 감염 예방 조치 협조 요청)

본 숙박시설은 숙박을 원하는 자에 대해, 여관업법(1948년 법률 제 138호) 제 4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숙박 계약 체결 거부)

본 숙박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 (2) 만실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을 때.
- (3) 숙박을 원하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4) 숙박을 원하는 자가 다음의 1 부터 3 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1. 폭력단원의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 년 법률 제 77 호) 제 2 조 제 2 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한다), 동법 제 2 조 제 6 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2.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3.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5) 숙박 희망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언행을 한 경우. 또한, 본 숙박 약관의 부칙 제 2 조에 규정된, 후생노동성 발표의 여관업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호(불법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모든 경우에 숙박 희망자가 먼저 해당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함)의 구체적인 사례도 포함한다.
- (6) 숙박 희망자가 여관업법 제 4 조의 2 제 1 항 제 2 호에 규정된 특정 감염병 환자 등(이하 “특정 감염병 환자 등”이라 한다)인 경우.
- (7)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숙박 희망자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촉진에 관한 법률(2013 년 법률 제 65 호, 이하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라 한다) 제 7 조 제 2 항 또는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숙박을 원하는 자가 본 숙박시설에 대해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객에 대한 숙박 관련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 5 조 제 6 항에서 정한 사항(본 숙박 약관 부칙 제 3 조에도 원문 그대로 기재됨)을 반복할 경우.
- (9) 천재지변, 시설 고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10) 숙박을 원하는 자가 본 숙박시설의 직원 및 다른 숙박객에 대해 폭언, 폭행, 협박, 갈취, 사기 행위, 본 숙박시설의 직원을 장시간 구속하거나 본 숙박시설의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 본 숙박시설 내의 평온한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11) 숙박 희망자가 소셜미디어 서비스(SNS)나 게시판 등에 본 숙박시설의 직원 및 다른 숙박객에 대한 비방 중상 등,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
- (12) 숙박 희망자가 술에 취한 상태 등으로, 본 숙박시설의 직원 및 다른 숙박객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본 숙박시설의 직원 및 다른 숙박객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언행을 한 경우.
- (13) 숙박 희망자가 과거에 본 숙박시설 또는 주식회사 PLAY&co 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에 대해 문제가 있었던 경우.

제 6 조 (숙박객의 계약 해지권)

숙박객은 본 숙박시설에 신청하여 숙박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본 숙박시설은 숙박객이 자신의 책임으로 인한 사유로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본 숙박시설이 예약보증금의 지급 기한을 지정하고 그 지급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급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숙박 계약 신청 시의 취소 정책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다만, 본 숙박시설이 제 4 조 제 1 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한해, 해당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할 경우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 본 숙박시설이 숙박객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본 숙박시설은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23:00(숙박 계약 시 미리 도착 예정 시간이 명시된 경우 해당 시간을 1 시간 경과한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본 숙박시설의 계약 해지권)

본 숙박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해당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다음의 1 부터 3 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1.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련자 등 반사회적 세력

2.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일 때

3. 법인으로서는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3)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언행을 한 경우. 또한, 본 숙박 약관의 부칙 제 2 조에 규정된, 후생노동성 발표의 여관업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호(불법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어떠한 경우에도 숙박 희망자가 먼저 해당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함)의 구체적인 사례도 포함한다.

(4) 숙박객이 특정 감염병 환자 등인 경우.

(5)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숙박객이 장애인 차별 해소법 제 7 조 제 2 항 또는 제 8 조 제 2 항에 따른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

(6) 숙박객이 본 숙박시설에 대해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객에 대한 숙박 관련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 5 조 제 6 항에 규정된 것(본 숙박 약관 부칙 제 3 조에도 원문 그대로 기재됨)을 반복한 경우.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유로 인해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흡연 금지 장소에서의 흡연, 침실에서의 흡연, 소방 시설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본 숙박시설에 표시된 이용 안내 또는 본 숙박시설 직원으로부터 설명받은 이용 안내의 금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9) 숙박객이 본 숙박시설의 직원 및 다른 숙박객에 대해 폭언, 폭행, 협박, 갈취, 사기 행위, 본 숙박시설의 직원을 장시간 구속하거나 본 숙박시설의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 본 숙박시설 내의 평화로운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10) 숙박객이 소셜미디어 서비스(SNS)나 게시판 등에 해당 숙박시설의 직원 및 다른 숙박객에 대한 비방 중상 등,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

(11) 숙박객이 술에 취한 상태 등으로 본 숙박시설의 직원 및 다른 숙박객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본 숙박시설의 직원 및 다른 숙박객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언행을 할 때.

(12) 숙박객이 과거에 본 숙박시설 또는 주식회사 PLAY&co 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에 대해 문제가 있었던 경우.

(13) 숙박객이 본 숙박 약관의 기재 사항에 위반할 때.

2. 본 숙박시설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숙박객이 이미 지급한 숙박 요금에 대한 환불은 일체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숙박 등록)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본 숙박시설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연락처 및 직업.
 - (2) 외국인인 경우, 국적, 여권 번호, 입국 장소 및 입국 날짜. 또한 체크인 시 여권을 복사하거나 전자적으로 보관합니다.
 - (3) 기타 본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 12 조의 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려는 경우, 미리 전항의 등록 시 해당 카드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제 9 조 (객실 사용 시간)

숙박객이 본 숙박시설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도착일 16:00 부터 다음 날 11:00 까지로 합니다. 다만, 연속으로 숙박하는 경우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는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숙박시설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항에서 정한 시간 외의 객실 사용 요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에 열거된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 (1) 출발일 11:00 를 지나면 1 박분의 숙박료의 50%가 추가 요금이 됩니다.
- (2) 체크인 시 12:00 를 초과한 경우 제 1 호의 추가 요금은 받지 않으나 1 박분의 숙박료가 추가 요금이 됩니다.

제 10 조 (이용 안내 준수)

숙박객은 본 숙박시설 내에서는 본 숙박시설에 표시된 이용 안내 또는 본 숙박시설 직원으로부터 설명받은 이용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제 11 조 (영업 시간)

본 숙박시설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9 조 기재의 사용 시간대로

2. 전항의 시간은 필요에 따라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12 조 (요금 지급)

숙박객이 지급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판매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급은 제 3 조에 정한 예약보증금과 숙박 요금으로 상계할 수 없으며, 숙박 요금이 더 많은 경우, 본 숙박시설이 인정하는 신용카드 등으로 숙박객의 체크아웃 시 또는 본 숙박시설이 청구한 시점에 프런트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 9 조에 정한 추가 요금 및 제 18 조에 정한 배상금 또는 위약금도 함께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숙박시설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청구합니다.

제 13 조 (본 숙박시설의 책임)

본 숙박시설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또는 그 이행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다음에 열거된 본 숙박시설의 책임으로 귀속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 본 숙박시설은 시설 영업일 동안 연박객의 개인실 또는 연박객의 침구 교환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매일 청소 및 시설 내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만, 다른 숙박객에 의한 파괴, 파손, 오염, 중증 특정 감염병 반입, 해충·야생동물 반입, 악취 물품 등 반입, 흡연 금지에도 불구하고의 흡연 및 화재 발생 등 당일 발생 또는 발견된 경우.

(2) 자연 재해, 화재, 폭동, 정전, 단수, 공공 가스 중단 및 행정 기관의 영업 중단 요청.

(3) 식품으로서 완전히 밀봉된 물품, 제 3 자가 제공하는 도시락 등 본 숙박시설이 단순히 배달만 담당하는 물품 또는 숙박객이 스스로 가져온 음식물에 대한 건강 피해 또는 식중독 등.

(4) 기타 본 숙박시설의 책임으로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

2. 본 숙박시설은 전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공할 수 없는 당일 1 일분의 숙박료만을 환불하고 다음 조항에 정한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알선된 숙박 시설의 숙박료는 숙박객의 부담이 됩니다.

3. 본 숙박시설은 연박하는 숙박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4 일마다 한 번의 빈도로 무료로 객실 리넨 교환, 쓰레기 수거 및 어메니티 교환을 진행합니다.

4. 본 숙박시설은 위생 관리상의 이유로 연박 중인 숙박객의 객실 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진행할 경우, 숙박객에게 사전 통지 및 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합니다.

5. 본 숙박시설은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 14 조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본 숙박시설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숙박객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할 것입니다. 또한, 알선된 숙박 시설로의 이동 교통비는 숙박 시작일 당일에 본 숙박시설 프런트에 방문하여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한 경우이며, 본 숙박시설과 숙박객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본 숙박시설에서 부담합니다.

2. 본 숙박시설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숙박객에게 지급하며, 해당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본 숙박시설의 책임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동 교통비에 대해서도 사회 통념상 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및 과도한 등급 업그레이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 (위탁물 등의 취급)

본 숙박시설은 숙박객으로부터 현금 및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본 숙박시설이 숙박객으로부터 현금 및 귀중품을 보관한 경우에도, 숙박객이 사전에 종류 및 가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분실 또는 손상 등 손해에 대해 본 숙박시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본 숙박시설의 프런트에 숙박객이 보관한 물품에 대해 분실 또는 손상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본 숙박시설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손해 배상도 면제됩니다.

3. 본 숙박시설에 숙박객이 가져온 물품에 대해 본 숙박시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분실 또는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 숙박시설은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으로부터 사전에 종류 및 가격을 명시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본 숙박시설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본 숙박시설은 5 만 엔을 한도로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16 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사전에 숙박객으로부터 해당 숙박시설에 수하물 배송 연락이 있었고 해당 숙박시설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숙박 전에 해당 숙박시설에 숙박객의 해당 수하물이 도착한 경우, 책임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합니다. 그러나 숙박객의 사전 연락 및 본 숙박시설의 승인이 없는 경우 도착한 수하물의 유무, 배송업체의 오배송, 배송 지연 등에 대해 본 숙박시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본 숙박시설에 분실된 경우 해당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 본 숙박시설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 지시를 요청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한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또한 해당 소유자와의 연락을 통해 배송 또는 처분이 필요할 경우, 그 비용은 모두 해당 소유자가 부담하며, 소유권 포기를 명시하더라도 소유자 또는 전 소유자는 해당 숙박시설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제 17 조 (주차 및 자전거 주차의 책임)

당 숙박 시설 이용에서의 차량, 이륜차 또는 자전거의 주차 주류에 있어서, 당 숙박 시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8 조 (숙박객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숙박시설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숙박객은 본 숙박시설에 대해 해당 손해의 배상 및 위약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각 호는 어느 하나가 아닌 해당 모든 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 (1) 본 숙박시설 내, 발코니 및 옥상에서의 흡연: 위약금 2 만 엔
- (2) 본 숙박시설 내 및 시설 내 쓰레기통에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 위약금 2 만 엔
- (3) 화장실 외에서의 배뇨 및 배설: 위약금 2 만 엔
- (4) 세면실 또는 욕실 내에서의 머리 염색: 위약금 2 만 엔
- (5) 반려동물 또는 동물의 동반: 위약금 2 만 엔
- (6) 구토 또는 출혈로 인한 시설·비품 오염: 위약금 1 만 엔
- (7) 열쇠 분실: 일반 열쇠 위약금 5,000 엔, 특수 열쇠 위약금 3 만 엔, 재발급 실비가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도 추가 위약금으로 부과됩니다.
- (8) 시설 비품의 파손 및 손상: 원상 복구에 필요한 금액(구매 또는 수리 비용)
- (9) 객실 또는 숙박 객실 판매 중단: 숙박 중단 기간의 일수 분의 숙박료를 위약금으로 한다.
- (10) 본 조항 각 호에 기재된 사항 또는 유사한 사항으로 일반 청소 외의 추가 청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청소 비용은 각 위약금과 별도로, 숙박자는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제 19 조 (본 숙박시설에서의 숙박 외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거부 또는 계약 해지)

본 숙박시설은 제 7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숙박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숙박객 및 본 숙박시설에서의 숙박 외 서비스 이용자(이하 “본 시설 서비스 이용자”라 한다)로 대체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 숙박 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인터넷 통신)

본 숙박시설 내에서의 인터넷 통신 이용은 본 시설 서비스 이용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통신사의 사유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해 사전 통지 없이 인터넷 통신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본 시설 서비스 이용자가 인터넷 통신을 이용 중 통신 장애 또는 중단으로 인해 본 시설 서비스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본 숙박시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며, 본 숙박시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 숙박시설에서 본 시설 서비스 이용자가 인터넷 통신을 부적절하게 이용하여 본 숙박시설 및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해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

제 21 조 (고객 괴롭힘에 대한 행동 지침)

본 숙박시설에서 본 시설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고객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제 7 조 및 제 19 조에 규정된 계약 해지를 실행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경찰 및 변호사 등에 연락하여 법적 조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 전조에서 언급된 고객 괴롭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체적 및 정신적 공격(폭행, 상해, 협박, 중상, 명예 훼손, 모욕, 폭언)
- (2) 위협적, 차별적 또는 성적 발언
- (3)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및 과도한 서비스 제공 요구
-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과 요구
- (5) 지속적, 집요한 또는 과도한 발언(장시간에 걸친 구속, 전화 또는 점거 등)
- (6) 본 숙박시설의 직원에게 대한 스토크 행위 및 개인에 대한 공격
- (7)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없이 진행하는 녹음 및 녹화
- (8) SNS 나 게시판 등에서 비방 및 허위 정보의 확산
- (9) 과도한 가격 협상, 이유 없는 상품 교환 및 금전적 보상 요구
- (10) 기타 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공격, 요구 및 발언

제 22 조 (기타 세부 규정 및 책임 범위)

본 숙박시설의 기타 세부 규정 및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 숙박시설은 소방법 규정에 따라 화재 경보기를 시설 내 각 곳에 설치하고 있으며, 화재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보기가 감지될 경우 시설 내 비상방송이 송출될 수 있습니다. 시설 내 방송으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입더라도, 본 숙박시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2) 객실 내나 시설 내에서 영업 목적으로 사진, 비디오, DVD 등 모든 기기를 사용한 촬영 및 녹음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촬영 및 녹음된 내용이라도 영업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다양한 SNS 를 통해 방송하는 행위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방송도 포함됩니다)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방문객과의 객실 내 면회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숙박 약관 제 2 조에 따라 등록된 숙박객(동반자 포함) 이외의 객실 내 면회 및 숙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5) 고객에게 배송된 물품을 본 숙박시설이 대신 수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분실 또는 손상 등이 본 숙박시설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6) 본 숙박시설의 주소를 주민 등록으로 거주지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체류 증명서는 “숙박 증명서”를 발급하며, “거주 증명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 (7) 셀프 보관소가 있는 경우, 해당 장소에서의 사고나 문제에 대해 본 숙박시설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8) 숙박객이 본 약관에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본 숙박시설의 운영 회사인 주식회사 PLAY&co 에 정보를 기록하며, 이후 해당 회사가 운영하는 숙박 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숙박 약관의 변경)

본 숙박 약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본 숙박시설과 본 시설 서비스 이용자 간의 분쟁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또한, 도쿄 지방법원 또는 도쿄 간이법원을 제 1 심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부칙 제 1 조 (본 숙박시설 직원 대응)

본 숙박시설 직원은 숙박객과의 소통에 있어 제 7 조, 제 9 조, 제 12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18 조, 제 22 조, 부칙 제 2 조 및 기타 관련 조항을 근거로 대응하겠습니다.

부칙 제 2 조 (후생노동성 발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원문 그대로)

여관업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호(불법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

(모든 경우에 숙박 희망자가 술에 취한 경우를 포함함)

- (1) 숙박 희망자가 직원이나 다른 숙박객에게 접근하여 의도적으로 기침을 반복하거나 침을 뱉는 등 행위를 하거나, 직원이나 다른 숙박객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2) 숙박 희망자가 여관·호텔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법 제 4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한 종업원을 큰 소리로 욕설하거나, 협력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고 소리치거나, 또는 다른 숙박객이 있는 장소에서 특정 감염병에 걸렸다고 소문을 내어 여관·호텔 측에 대응을 강요하여 여관·호텔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나, 기타 여관·호텔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종업원을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여관·호텔 측에 대응을 강요하여 여관·호텔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력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3) 숙박 희망자가 종업원이나 다른 숙박객에게 동의 없이 또는 동의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거나 그 상태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비동의 외설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4) 숙박 희망자가 종업원이나 다른 숙박객에게 공중의 눈에 띄는 장소에서 특히 나체를 드러내는 경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5) 숙박 희망자가 시설 내의 비품이나 설비를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기물파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6) 숙박 희망자가 종업원에게 “SNS 에 이 여관의 악평을 올릴 거야”, “이 호텔에 불을 지를 거야”라고 말하거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통보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7) 숙박 희망자가 종업원에게 “숙박료를 무료로 해주지 않으면 SNS 에 이 여관의 악평을 올릴 거야” 등과 같이 협박하는 경우, 강요 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8) 숙박 희망자가 종업원에게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해를 가할 것을 통보하여 협박하거나 폭행을 사용하여 무릎을 꿇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9) 숙박 희망자가 종업원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 앞에서 “바보”, “추녀” 등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10) 숙박 희망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극히 무례하거나 폭력적인 언행으로 불편을 초래한 경우, 경범죄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11) 숙박 희망자가 인원을 숙여 숙박하거나 숙박료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칙 제 3 조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 5 조 제 6 항. 원문 그대로)

법 제 5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다른 숙박객에 대한 숙박 관련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 (1) 숙박료 감액 등 그 내용의 실현이 어려운 사항의 요구(숙박에 관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해소 촉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 65 호) 제 2 조 제 2 호에 규정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함)
- (2) 무례하거나 폭력적인 언행 또는 종업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언행(영업자가 숙박 희망자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해소 촉진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1 항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한 것에 기인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함)을 포함한 요구로서, 해당 요구를 한 자의 접대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이상의 노력을 요하는 것

부칙 4 조(사우나 이용에 있어서의 금지 사항 및 확인 사항)

본 숙박 시설의 사우나를 이용하실 때에는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 (1) 사우나 실내 및 휴식 공간 등에서의 흡연 행위.
종이 담배, 가열식 담배, 전자 담배, 시샤 등 이와 유사한 흡연 기구 및 화기 사용물을 포함합니다.
- (2) 수영복, 수건 등 가연성이 있는 물품을 사우나 실내에 말리는 행위 또는 방치하는 행위.
- (3) 배터리, 전기 기기, 스프레이류 등, 발열·발화·인화에 의해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사용 또는 보관.
- (4) 당 숙박 시설이 지정·제공하는 아로마 이외를 사용한 로우류 행위.

2 전항의 금지 행위가 발각되었을 경우, 당 숙박 시설은 위약금(벌금)을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후의 시설 이용을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3 각항의 금지 행위 또는 이들에 준하는 부적절한 이용에 기인해 발생한 화재, 사고, 손해 등에 대해서는, 당 숙박 시설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